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신 현 주*

〈요 약〉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십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탐정, 민간조사원, 파트너십, 치안서비스,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IV.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V. 결 론 |
|--|

I. 서 론

최근에는 해킹, 금융거래사기, 신원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 지능화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고도의 전문적인 조사 및 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범죄가 2004년 77,099건에서 2013년 155,366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도별로 편차는 존재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¹⁾ 사이버범죄는 개인의 인권침해 및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들의 신뢰도 하락 및 경제적 손실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입힌다(Cavusoglu, H., Cavusoglu, H., & Raghunathan, S., 2004). 따라서 그 예방과 철저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범죄이다.

하지만 경찰은 제한된 수사 인력과 기술만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까지 해야 한다. 전 세계가 하나인 시장 경제 체제 속에 살면서 신속한 정보 수집과 보다 전문적인 분석 등에 대해 민간 영역의 참여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140차례 약 8,9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해외 탐정들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6년 2월 1일 검색.

가 늘어나면서 은닉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해외 사설탐정과 손을 잡은 것이다. 탐정 고용 수수료는 회수 금액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²⁾ 국가마다 상이한 법 체계로 인해 국내 시스템만으로는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지의 민간조사원을 고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하순봉 의원의 민간조사원법안이 첫 발의된 이후 현 19대 국회(2012~2016년) 송영근, 윤재옥 의원의 발의안까지 모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정부는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고용노동부, 2014. 3. 18)’에 따라 민간조사원을 합법화하고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준비하기로 하면서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보다 민간 영역의 보안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힘과 높은 비용 등의 연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년 동안 지능화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적절한 훈련과 조직의 융통성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을 특화된 민간 경비 업체에 이양시켜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라리 경찰은 주로 폭력범죄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요 범죄에 국한시키자고 제안하는 추세이다(Erwin A. Blackstone and Simon Hakim, 2010: 55-56). 호주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행함이 비능률적인 탐지·추적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³⁾ 이들을 이용해 수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민간 보안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조사원은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2) 국민일보, ‘해외 은닉자산 찾아라...예보, 사설탐정까지 고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51106&code=11151100&cp=nv>, 2015년 9월 21일자.

3) 헤럴드경제, ‘범죄수익 환수를 1%미만, 이대론 안 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31000332>, 2015년 12월 31일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민간조사제도의 의의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이익(benefit)과 위험(risk)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의 주요 논거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개념

그동안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이고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컴퓨터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범죄(internet crime)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전자가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후자는 범죄 공간을 형성하는 수단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양성은, 2013: 56).

사이버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상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 기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네트워크망이나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라는 물리적 설비를 지칭하는 의미도 포함된다(윤민우, 2014: 119). 그러므로 사이버범죄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 대한 훼손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입법 정책가 또는 학자마다 연구범위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수법이 결합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유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 등 일반 범죄의 장소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무선 Wi-Fi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비로도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면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분류 방식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유형화한 것

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하여 유형화했으나,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침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로 새롭게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⁴⁾

〈표 1〉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범죄유형	개 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예: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예: 인터넷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스팸메일 등
불법콘텐츠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 예: 사이버음란물(일반·아동), 사이버도박(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등),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스토킹 등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6년 2월 1일 검색.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며, 구(舊) 분류에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와 불법콘텐츠 범죄인데, 구(舊) 분류의 일반사이버범죄를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이용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스팸메일 등이 해당한다. 불법콘텐츠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스토킹 등이 해당된다.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6년 2월 1일 검색.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초국가성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국가 간 경계와 지리적인 문제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윤건·서정욱, 2015: 273). 때문에 사이버범죄는 여러 나라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범죄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현실 공간과 같이 행위자의 행위지와 범죄 발생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광역적인 형태의 특성과 아울러 수사 시 초국가적인 특성을 띄고 있다(김상운·조현빈, 2013: 144).

(2) 전문성

사이버범죄의 특성 상 컴퓨터나 전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기기를 잘 활용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특히 범행주체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거나 조직의 내부자인 경우는 단속기관의 접근이 곤란하여 은폐될 소지도 많다(김상운·조현빈, 2013: 144-155).

(3) 은밀성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은밀성으로 인해 실제 행위자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가려진다. 때문에 침해행위의 가해자는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범죄를 수행할 수 있다(윤민우, 2014: 217). 그래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윤건·서정욱, 2015: 273).

(4) 광범위한 피해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의 형태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빠른 전파성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조호대·신동일, 2009: 333). 명예 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널리 유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사기도 마찬가지이다(김상운·조현빈, 2013: 145).

2. 민간조사제도의 의의와 패러다임의 변화

1) 민간조사제도의 개념과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사회가 점차 첨단화 되면서 고도의 지능화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이상 국가만의 힘으로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와 자생적 발전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형성된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공배완·박용수, 2014: 4). 그동안 치안서비스는 국가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와 직면한 치안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부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민간경비산업은 개인 및 기업의 신변보호, 경비 등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월드컵,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경비 및 경호 등을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환경 설계, 화재예방, 심지어 개인의 질병점검까지 하나의 보안 관리 시스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신현주·김평식, 2013: 88).

민간조사제도는 민간 경비 분야 중 하나로서,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탐정이나 민간조사원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는 남의 비밀한 일을 은밀히 알아내거나 범죄사건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적법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박종훈·서동경, 2011: 72). 외국에서는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PI), Private Detective(PD), Field Operator(FO), Private Inquiry Agent(PIA) 등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탐정업을 인정하면서도, 탐정 기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등 법률적 모순이 존재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최근 사이버범죄, 기업보안 등 새로운 치안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모두 기존 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지고 있지만 경찰 역시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치안 수요에 비해 한정된 경찰의 인력과 자원, 전문가의 부족, 관할권과 현행 법제도를 넘어서

는 침해행위에 대한 치안 공백 현상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훈, 2009; 최종윤·이주락·황세운, 2012; 남선모, 2013; 박성수·신현주, 2014; 장현석·이상원, 2014).

하지만 관련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업무 범위의 제한, 자격과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박준석·정연민·김영훈, 2010; 손상철, 2011; 조성구·김태민·김동제,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로 경찰의 치안비용 절감 측면을 살펴 보면, 수사 前 단계의 업무를 민간조사원과 협조하여 조사할 경우 경찰관 1인당 0.051명의 경력이 절약될 수 있고, 수사 분야 경찰관에 대비하면 약 942명의 경력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웅, 2015: 10). 국가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미 실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고효율 저비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⁵⁾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경찰-민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함께 시민은 합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사기관 역시 민생치안 업무에 더욱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민간조사원 법제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2) 파트너십 치안서비스

(1)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개념

‘파트너십 치안서비스(partnership policing)’란 보통 ‘협력 치안’으로 불리곤 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 말까지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s)이란 용어가 경찰 개혁에 관한 논의 전체에 넓게 퍼져있었다. 범죄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이란 첫째, 민간과 경찰이 기술과 행정 및 사람까지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범죄 패턴과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초과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 까지도 말한다(Elizabeth, 2004: 71-72).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찰의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한 치안 서비스 활동에 있어 경찰 내·외부의 공조, 경찰 이외의 공공기

5) 조선일보, ‘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주민 주도형 재난관리 시스템 마련해야...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하드웨어적인 장비 지원이 대부분이며, 양성한 인재들이 취직할 곳도 없다. 미국은 은행 등 산업군별로 모여 공동 사이버 대응 체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협력하지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1/2015092102117.html, 2015년 9월 22일자.

관과의 협력, 민간 등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협력활동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민간경비나 일반시민 등 민간의 영역과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석청호 2010: 70).

이와 같이 종래 국가가 독점해 오던 경찰권이 부족한 공권력의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민간에 일부 위임되는 ‘제3의 탈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이형민·이민형, 2014: 10-11). 일례로, 민영화의 일환으로 경찰업무 중 일부 경비업무가 민간 경비로 이양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권한의 일부가 민간에 이양되는 것 외에도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민간의 협력 역시 포함될 수 있겠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9: 75).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회 부패, 사기, 폭력 등 범죄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나, 비 핵심 치안활동을 민간에 아웃 소싱 함으로써 경찰은 지역사회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있다(Minnarr, 2004: 6-7). 미국에서도 2011년 9·11 이후 핑커튼 내셔널 탐정회사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파괴시킨 적이 있으며, 미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들도 함께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반격을 한 사례도 있다(Sameer, 2007: 19).

(2)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이익과 위협

경찰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융통성이 결여된 고 비용의 치안서비스 제공, 혁신에 대한 압력 거부 그리고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률전문회계사(forensic accountants)를 고용할 예산이 부족하며, 시민들의 특별한 요구(needs)에 대한 반응(responsiveness)도 미흡하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전략 수립 속도도 더딘 편으로 볼 수 있다(Erwin A. Blackstone and Simon Hakim, 2010: 57-58). 게다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피해 입은 기술력 등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만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절차와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므로 기업의 손실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한계점도 있다(이하섭·조현빈, 2012: 272).

반면에 민간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임금은 경찰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inal)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회계사에게 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갖고 있다(Erwin A. Blackstone and Simon

Hakim, 2010: 57-58).

그러므로 경찰과 민간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협력을 한다면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수사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찰과 민간의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이익(benefit)과 위험(risk)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경찰과 민간의 파트너십 치안서비스의 이익과 위험

이익(benefit)	위험(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의 증대 : 지식, 자원 및 기술 공유에 의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지지 :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근본적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 치안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 찬성하는 '전문적인 의제(professional agenda)'를 포함하고 있다. • 평등한 보호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해 오히려 경찰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 치안 서비스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특화된 스킬과 기술 자원에 대한 접근 :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기술 전문가를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외부 계약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의 영역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의 부족 : 민간은 경찰 기관과 똑같은 형식과 합법적인 시스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 운반, 용의자 구급 및 강제력을 수반할 수도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권리를 방해할지도 모른다. • 국가성(stateness)의 손실 : 치안서비스와 안보활동은 서로 다른 그룹이나 개인의 권리 등에 관한 갈등 관리에서 현명한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기관만이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 민간의 치안 서비스는 아마도 빈약한 판단 또는 과잉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공공 안전을 위협롭게 할지도 모른다. 시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관하여 혼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 불평등한 보호 : 이들의 성장은 시민 보호에 있어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시민은 그들이 지불한 만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경찰 직무에 대한 위협 : 더 낮은 스킬과 낮은 보수에 대한 증가된 가능성은 직업 안정성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민간 영역과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다.

자료 : Malcolm K. Sparrow (2014 : 9) 재구성

파트너십을 통한 이익(benefit)으로는 기술이나 정보 공유로 업무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더욱더 지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조사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해 경찰은 오히려 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동

안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었던 특화된 고도의 전문 기술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은 경찰이 아니므로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치안서비스는 하나의 공적인 기관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조사원은 시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의 수사권을 갖은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계층에게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민간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쟁은 불공평한 것이며, 경찰이라는 직무 자체에 대한 위협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3) 주요 국가의 민간조사제도

외국의 경우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조사, 정보획득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 혹은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민간조사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승철, 2008: 256). 이들은 활동 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시민들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Keith, 2001: 12).

미국 최초의 민간조사원으로 유명한 사람은 앨런 핑커튼(Allen Pinkerton)으로 그는 1852년 핑커튼 내셔널 탐정사무소(Pinkerton's National Detective Agency)를 창설하였다(Sameer, 2007: 19). 그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암살계획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조화폐 적발임무도 수행하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조사원은 컴퓨터 포렌식 조사원(Computer forensics investigators), 법률 조사원(Legal investigators), 기업조사원(Corporate investigators), 금융 조사원(Financial investigators)으로 구분된다.⁶⁾ 민간조사원은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탐정들과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법정 증언 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받는다(강영숙·김태환, 2006: 43). 각 주마다 규정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증이 필요하다.

6)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www.bls.gov, 2016년 2월 1일 검색.

영국은 2001년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을 제정하면서 민간 조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법률에 따라 경비업국(Security Industry Authority)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여기서는 ‘특정인물 또는 활동이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이나 재산이 멸실한 상황 또는 그 수단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감시, 조회, 조사 하는 것’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⁷⁾

Ⅲ. 사이버범죄의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1. 관련 법·제도상의 한계

1990년 후반 사이버범죄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왔다(권양섭, 2014: 188). 신기술을 이용한 범주는 사법 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그에 맞는 법은 부재하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박성훈, 2011: 70).

또한 인터넷 사용의 편리성이 증가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 침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의 문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의 공유 등에 관한 국제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조 등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공적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이 가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 역시 제도상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침해 사건에 우선적일 수 밖에 없는 국가 수사력의 한계도 존재한다(박종훈·성도경, 2011: 75).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여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국가의 공적 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범죄 등에 민간조사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정연민, 2007: 73-74; 신성균·박상진, 2009: 220-221).

7) 영국 민간경비산업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2/contents>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불법이므로,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업체들의 국내 활동을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서 Risk Management 또는 Risk Consultant 등의 명칭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은 기업 간 합병 또는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박성수·신현주, 2014: 85).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민간조사원들(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은 약 26,8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평균 임금은 52,880달러로 보고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⁸⁾ 이들의 국외 활동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부름센터, 흥신소라 불리는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성행하면서 점차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온라인 쇼핑물과 주식거래 중개 사이트 등에 대한 디도스(DDoS)공격을 진행할 수 있고, 경쟁 관계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⁹⁾ 심지어 청부살인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성에 대한 수요 증대와 인력 부족

사이버범죄의 최대 난점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이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수는 없다. 현재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그리고 지방경찰청 소속의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에서 전담하여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능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연구직을 특별 채용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전문 인력이 많이 증원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신종 범죄 유형이 출현하는 시기 또한 빠르고, 전문적인 IT 기술과 그에 따른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조호대, 2011:

8)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bls.gov/oes/current/oes339021.htm>, 2016년 2월 1일 검색.

9) 디지털타임즈, '디도스 공격해주세요...경쟁사이트 마비 의뢰 기승',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402101460813001, 2015년 11월 23일자.

253). 또한 범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늦은 대응기법과 제한적인 인력 등은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김상운·조현빈, 2013: 148).

게다가 국가 수사기관이 보유한 각종 과학수사 장비가 수시로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되거나, 이를 다룰 수사관에 대한 교육이 그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게다가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분야별 전문가의 능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민간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신현주, 2011: 159). 이미 미국의 일부 경찰서에서는 사건초기부터 사체감식이나 현장감식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해당 전문회사의 법의학 전문가나 과학자에게 의뢰하여 수사는 경우도 많다.

전문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요원이나 법조인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민간조사원이 활동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박종훈·성도경, 2011: 76).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서 수사기관이 여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권양섭, 2014: 189-190).

IV.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1.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파트너십 치안 서비스의 구현

치안서비스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급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조사원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이승철, 2008: 256). 그러므로 우선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경비의 영역을 보다 넓게 확대시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김상운·조현빈, 2013: 149). 파트너십 치안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공적인 수사기관의 관할권과 권한의 범위를 넘어

서는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사이버범죄는 초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피한 국내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상대국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국에 소재 확인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때문에 외국에서의 소재확인 작업은 해당국의 민간조사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소재지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박종훈·성도경, 2011: 77). 반대로 외국 수사기관이 국내 민간조사원에게 의뢰를 할 수 있고, 국제 민간조사원 상호간에 정보 공유도 가능해질 것이다.

계다가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불법 도박 또는 음란 사이트는 단속을 접속을 차단하면 도메인을 바꾸고, 회원에게 새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 사법기관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위한 조사권을 민간조사원에게 부여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함으로써 민간조사원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신현주, 2011: 158).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민간조사원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게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조사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민간조사원은 조사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증거자료 등으로 제공하며, 변호사는 자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민간조사원의 도움을 받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김상균, 2007: 33). 이처럼 법률적 판단이 아닌 변호사 업무 중 사실 조사 업무에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증거수집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법제도화로 인해 불법적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국가가 인정하는 업체가 아닌 속칭 무자격자에게 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식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엄히 처벌할 수 있어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전문적인 조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분야별 전문 자격증 및 면허제도의 도입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가기관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사이버범죄는 특별한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찰 중심적인 형태의 예방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영역을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김상운·조현빈, 2013: 147-150). 따라서 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문 민간업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갈수록 해킹이나 금융사기의 방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므로 이러한 방법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간의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과연 엄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오늘날 민간 보안 분야는 새로운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윤리강령을 따르고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자에게만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을 의미한다(Robert, Edward & David, 2012: 14). 그러므로 선진국과 같이 분야별 자격증 및 면허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조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산업보안협회에서는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CPP) 이외에도 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PCI), Physical Security Professional(PSP)을 추가로 인증하고 있다.¹⁰⁾ 또 국제정보시스템 보안자격협회에서는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SSCP(Systems Security Certified Praticitioner)¹¹⁾ 등의 전문 자격증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컴퓨터 포렌식 조사관(Computer forensics investigators)들은 Certificate forensics Computer examiner(CFCE), Certified Ethical Hacker(CEH), Certified Penetration Test(CPTI), Certified Computer Forensics Examiner(CCFE), Certified Reverse Engineering Analyst(CREA)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갖추고 있거나 전문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¹²⁾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민간조사원에게 국제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업체들 사이에서 경

10)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는 미국산업보안협회(ASIS)에서 인증하는 시험으로 고졸 이하인 경우 9년 이하, 학사 소지자의 경우 7년 이하의 보안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최소 3년 이상은 책임자로서의 경력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사(Investigation) 분야의 시험 내용은 조사자원, 조사방법, 조사보고 및 결과, 조사유형 등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기밀정보의 보호, 개인보안, 물리적 안전과 조사 등이 있다(<https://www.asisonline.org/Certification/Pages/default.aspx>, 2016년 2월 1일 검색).

11) 국제정보시스템 보안자격협회(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CISSP)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안업무 및 컴퓨터 범죄수사관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http://www.isc2.org/>, 2016년 2월 1일 검색.

12) <http://privateinvestigatoredu.org>, <https://www.eccouncil.org/>, 2016년 3월 15일 검색.

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자격증 과정 개발 및 강화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격시험 및 일정한 훈련과 교육 등을 통과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 법률조사원(Legal investigators)이 되기 위해 1,000자 이내의 연구 페이퍼,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기도 한다.¹³⁾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 기관 공무원 및 경비지도사와 견주어 동일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관 학과 대학 졸업자 및 해당업무 관련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시험의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제 사유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손상철, 2011, 조민상·오윤성, 2013: 554). 또한 제도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V. 결 론

최근 스마트폰 이용 범죄, 금융통신사기,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익보다는 공익 침해 사건에 우선적일 수 밖에 없는 국가 수사력의 한계와 미흡한 정보 수집 능력 등은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도움이 절실히 보인다. 현재 국가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수법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국가 수사기관의 미약한 법률전문지식 및 정보수집 기법 등을 보완해주고, 보다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미 외국에서는 사이버 탐정, 사이버 포렌식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민간조사원들이 활동 중이다. 현대의 사이버범죄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13) 국제 법률조사원 협회, <http://nalionline.org/>, 2016년 2월 1일 검색.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독점하는 형태의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사기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철저한 조사를 맡을 직원과 금융관련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경찰은 둘 다 갖고 있지 못하다(Dempsey, 2003: 24).

사이버 범죄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수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원 제도를 하루 속히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과의 파트너십 치안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로서 경찰은 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시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자격시험 및 면허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충분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면허가 부여된다면, 이 제도에 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전문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숙·김태환 (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12: 25-50.
- 경찰청, 2015, 2014 경찰통계연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년 3월 18일자.
- 공배완·박용수 (2014), 민간경비 활동의 공식성 확대 논의, 융합보안논문지, 14(1): 1-10.
- 권양섭 (2014),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법학연구, 53: 177-193.
- 김상균 (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 10-39.
- 김상운·조현빈 (2013),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141-151.
- 김주희 (2015), 수사단서를 이용한 동일 사이버범죄판단기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4): 767-780.
- 박성수·신현주 (2014),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3(2): 81-106.
- 박성훈 (2011),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의 모색, 한국범죄학, 5(2): 43-80.
- 박중훈·성도경 (2011),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2(3): 71-97.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신성균·박상진 (2009),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199-228.
- 신현주 (2011), 치안업무한계에 따른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139-166.
- 신현주·김평식 (2013), 민간경비원의 범죄사태 분석을 통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4): 82-112.
- 양성은 (2013), 사이버 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Internet & Security Focus. 9월: 54-69.
- 윤건·서정욱 (2015), 사이버 범죄가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3): 269-288.
- 윤민우 (2014),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 지, 40: 109-145.
- 이병규 (2014), 경비업의 공법적 논의, *공법학연구*, 15(3): 111-137.
- 이승철 (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55-276.
- 이하섭·조현빈 (2012),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6): 257-281.
- 이형민·이민형 (2014), 협력치안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민간경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2): 241-258.
- 정웅 (2015), 한국 민간조사업의 전개와 시장규모,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경제적 효과 추정, *치안정책리뷰*, 48: 9-10.
- 조호대 (2011),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전문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31: 239-258.
- 조호대·신동일 (2009),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사고 현황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보*, 9(1): 331-338.

2. 국외문헌

- Cavusoglu, H., Cavusoglu, H., & Raghunathan, S. (2004). "Economics of IT Security Management: Four Improvements to Current Security Practice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4: 65-75.
- Elizabeth E. Joh (2004), The Paradox of Private Policing,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5(1): 49-132.
- Erwin A. Blackstone and Simon Hakim (2010). Privatizing the police, *Milken Institute, The Milken Institute Review Third Quarter*, pp. 54-61.
- Keith (2001), *The Private Investigator's Handbook*, Sydney: Bay Island Group Pty Ltd.
- Malcolm K. Sparrow (2014). *Managing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policing, New perspectives in Policing*,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Minnarr, A. (2004), *Crime Prevention, Partnership Policing and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The South African Experience*, University of Maribor, Slovenia.
- Sameer Hinduja (2007), Computer Crime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Leveraging Knowledge from the Past to Address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1(1): 1-26.
- U.S. Department of Justice (2009), *Operation Partnership-Trends and Practices in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Collaborations*.

3. 기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제 법률조사원 협회, <http://nalionline.org/>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bls.gov/oes/current/oes339021.htm>

미국 산업보안협회, <https://www.asisonline.org>

영국 민간경비산업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2/contents>

국민일보, 2015년 9월 21일자.

디지털타임즈, 2015년 11월 23일자.

조선일보, 2015년 9월 22일자.

헤럴드경제, 2015년 12월 31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Shin, Hyun-Joo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The latest trend of cyber crime is being evolv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way over the global, like internet fraud, cyber gambling, hacking and etc. Hence natio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bilize high specialized skills and metho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each nation. But it is hard to respond in rapid and effective way because of propoor, distribution of group and insufficient of related legal system. Already in other countries, not considerable amount of services are given to private investigators in detection and tracking part which is inefficient by nation. So it ha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compensate the defect and study about private investigator usage as companion of cooperation policing for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The way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yber-crime is reevaluate meaning of partnership policing and need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Also it is to analyze the main issue about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introduction.

First,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which is based upon partnership policing should be made up. Moreover, to establish the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it is to propose introduction of leading professional glob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with sufficient education and test. We are expecting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can improv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mot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Key words :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 partnership, policing, cyber-crime,
cyder security